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52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일정한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1.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
2. 법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 구축·운영 내용
3.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제3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
별표 11 제2호가목 중 “다이빙대·계류장”을 “방파제·다이빙대·계류장”
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제3항, 제37조제2항제5호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별표 11]

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(제20조제1항 관련)

1.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

- 가.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(이하 이 별표에서 “수상레저기구등”이라 한다)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·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.
- 나.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·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(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)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.
- 다.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.
- 라.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.
- 마.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
- 바.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2.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

- 가. **방과제**·다이빙대·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.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) 계류장

- 2)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) ①·② (생략)	제33조(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1.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2. 법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 구축·운영 내용 3.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제3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	제3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경찰청장(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에 관한 사무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351